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오피스텔 분양광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홈페이지 운영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운영 및 사전예약 관리를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또는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함.(미성년자 동반 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분양 상담전화(☎1522-4994),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1.12.22) 기준임.

■ 거주자 우선분공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2.21. 분양광고일과 다름)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함.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북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됨.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함.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임.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의 건축물로 전매가 가능함.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62102(2021.12.21.)로 분양신고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725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 25층 1개동 오피스텔 46실(별도 장기일반민간임대 및 분양예정 : 아파트 446세대,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총 9,695.00㎡ 중 오피스텔 지분 912.2943㎡
- 건축물 연면적 : 총 88,557.0479㎡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중 오피스텔 8,333.1708㎡)
- 주차대수 : 총 706대 중 오피스텔 65대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4호 "업무시설"에 해당 함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 : 2026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단축)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가지 조성사업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내진설계 등급

지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20	S2	1.2 (내진등급1)	D	중요도 1	4.0 (내력벽 시스템 -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차로폭 6.4M, 높이 지상 1층 9.5M, 기타층 높이 3.2M 이상, 오피스텔 주차대수 65대

※ 오피스텔 주차장은 104동 지하 1층에 오피스텔 전용 주차공간(65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주차공간과 공동주택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는 공동으로 이용함.

※ 오피스텔 동(104동)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인 지하 2층~4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2층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이용객 또는 아파트 입주민 등의 출입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 관리사무소
지상 2~25층	오피스텔

■ 공급면적

(단위 : m², 실)

타입	호실수	실별 계약면적						실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벽체공유, 계단, 복도 등)	공급면적	기타공용 (전기, 기계실, 경비실 등)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84OA	46	84.9850	33.2415	118.2265	9.4296	53.4998	181.1559	19.8325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하였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의 구분은 분양광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목치수로 산정되어 있음. (2014.12.3. 개정)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VAT포함)

타입	층/라인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 (2022.06.09.)	2회 (2022.12.09.)	3회 (2023.10.09.)	4회 (2024.08.09.)	5회 (2025.01.07.)	6회 (2025.07.07.)	입주예정일 (2026.01.)
								계약시	2022.01.28.							
84OA	3층	1호	1	173,159,624	321,582,160	32,158,216	526,900,000	10,000,000	4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158,070,000
		2호	1	174,901,409	324,816,901	32,481,690	532,200,000	10,000,000	4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159,660,000
	4층	1호	1	175,032,864	325,061,033	32,506,103	532,600,000	10,000,000	4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159,780,000
		2호	1	176,807,511	328,356,808	32,835,681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5층	1호	1	176,938,967	328,600,939	32,860,094	538,400,000	10,000,000	43,840,000	53,840,000	53,840,000	53,840,000	53,840,000	53,840,000	53,840,000	161,520,000
		2호	1	178,746,479	331,957,746	33,195,775	543,900,000	10,000,000	4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163,170,000
	6층	1호	1	178,845,070	332,140,845	33,214,085	544,200,000	10,000,000	44,420,000	54,420,000	54,420,000	54,420,000	54,420,000	54,420,000	54,420,000	163,260,000
		2호	1	180,652,582	335,497,653	33,549,765	549,700,000	10,000,000	4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164,910,000
	7층	1호	1	180,751,174	335,680,751	33,568,075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호	1	182,591,549	339,098,592	33,909,859	555,600,000	10,000,000	4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166,680,000
	8층	1호	1	182,657,277	339,220,657	33,922,066	555,800,000	10,000,000	4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166,740,000
		2호	1	184,497,652	342,638,498	34,263,850	561,400,000	10,000,000	4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168,420,000
	9층	1호	1	184,563,381	342,760,563	34,276,056	561,600,000	10,000,000	4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168,480,000
		2호	1	186,436,619	346,239,437	34,623,944	567,300,000	10,000,000	4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56,730,000	170,190,000
	10~ 20층	1호	11	186,469,484	346,300,469	34,630,047	567,400,000	10,000,000	4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170,220,000
		2호	11	188,342,723	349,779,343	34,977,934	573,100,000	10,000,000	4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171,930,000
	21~ 25층	1호	5	188,375,586	349,840,376	34,984,038	573,200,000	10,000,000	4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171,960,000
		2호	5	190,281,690	353,380,282	35,338,028	579,000,000	10,000,000	4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을(수분양자를 지칭하는게 올인 경우에)”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함.(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구광역시)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함.
- 우선 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추첨하며 우선 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됨.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10%)	일반공급 호실	
840A	46	4	42	※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공통사항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함.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연체료 및 대출이자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보다 선위순위로 변제함.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회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음.
- 본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됨.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당시 기준으로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지분별 기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이 분양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II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광고일 현재(2021.12.2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함. 청약접수 방법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받지 않음.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함.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호실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함.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12.21.)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 오피스텔의 청약접수 방법은 사업 주체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시 별도의 청약예치금을 수납하지 않음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추천 전문 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전산 추천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 무작위 추천하여 결정됨.

■ 청약일정

구분	내용	
청약일정	- 일시 : 2021.12.27.(월) 9:00 ~ 24:00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2021.12.28.(화) - 당첨자 발표 : 2021.12.28.(화) 14:00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계약기간	- 2021.12.30.(목) [10:00 ~ 16:00]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 당첨자 확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층수 및 동 위치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예비 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호수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일시 : 2021.12.28.(화) 14:00
- 추첨 : 추첨 전문 업체의 전산 프로그램 추천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 및 당첨자 결정할 예정이며, 청약자는 추첨 방식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 확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함.

II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당첨자 계약기간 : 2021.12.30.(목)
- 계약체결 장소 :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건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 문의전화 : 1522-4994
- 계약금 납부: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함.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 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 체결시	- 계약체결 신청서(건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입인지(구입처 :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법인 계약시	- 계약체결 신청서(건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수입인지(구입처 :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건본주택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상기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110144	(주)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지정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 건본주택 및 본사에서 현금으로 분양대금 수납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시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 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건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오피스텔의 전매가능 시기는 계약금 완납 및 전매일 당일까지 사업주체에 미납된 채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오피스텔의 분양 및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세부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단, 중도금 납부시에는 해약이 불가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분양광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음.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관리, 운영되며 관리비 또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부과됨.(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관리단과 협의에 의하여 통합관리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이 시행될 예정임.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함.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임.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름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대구광역시 북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하의 오피스텔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부터 전매가 가능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이후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안내

- 입주예정 : 2026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취득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IV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무상옵션 품목

구분	선택1	선택2	비고
주방	BI김치냉장고	수납장	BI김치냉장고 : LG K221PR14BR1/L1
침실2, 3	각 실 사용	침실 통합형	

※ 무상옵션 품목 관련 유의사항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LG 발트인김치냉장고장은 입주시점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설치 불가 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추가선택 품목은 변경 불가하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음.

V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유치원생-9권역(북구권) 내 분산 배치 가능
- 초등학생-통학구역은 칠성초이며, 학교시설 부족으로 유입학생을 적정 배치할 수 없음. 단, 칠성초 증축을 통해 학교시설(일반교실 3실, 특별교실 2실 및 부대시설)이 적기 확보될 경우 유입학생 적정 배치가 가능. 필요 학교시설 규모는 향후 추가 개발사업 및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유입학생 적정배치를 위하여 “대구칠성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비 기부채납 협약(2021.04.30.체결)”에 따라 기부채납금은 납부 완료되었음.)
- 중학생-6학교군(북구권)에 분산 배치 가능함.

- 고등학생·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함.
- 공급신청서의 [타입]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분양광고상[타입별(㎡)]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는 84O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일한 평형/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비치된 도면을 통해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허가 변경 및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사업주체 명의로 발행 될 예정임.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하며,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임.
- 공유시설(자전거보관소, 방재실, 주차장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대지는 공동주택 입주자와도 공동으로 사용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지 서측 및 남측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지 동측의 차량진출입구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오피스텔용 주차장은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과 공동 사용함에 따른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지에서 비상차량용 도로는 비상시 소방차 등이 출입하는 출입구로서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서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층 표시, 주동 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타입내부 및 본 건물의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건립타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헬륨 및 지하주차장 헬륨용 DA,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색상, 형태, 유리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오피스텔 호실별 소방관 진입창이 2개소(하향식 피난구실, 침실1) 설치될 예정이며,위치에 따라 창호 종류, 형태, 크기, 설치 위치, 개폐가능 여부, 프레임/유리 사양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침실1에 설치된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외부 방충망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시 관계 법규 기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타입 내부 불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불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 마루판, 벽지, 타일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사업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관련 인·허가,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여야 함.
-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건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건물 동측, 및 북측에 다른 건물이 인접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환기, 조망권, 소음 등이 심할 수 있으니, 해당 호실 및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건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지하주차대수는 총 706대(아파트 629대, 오피스텔 65대, 근린생활시설 12대)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1층에서 아파트용 주차장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출입 차량과 공용으로 사용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오피스텔 택배 보관함은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 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로비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사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사 자체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오피스텔 옥상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화재 시 인접한 호실에 소음·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4동 오피스텔 옥상에는 소방용 제연 배기팬이 설치될 예정이며, 화재 시 작동되어 소음·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제연웬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조정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주방TV, 디지털도어락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호실 내 현관,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욕실은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단차부위 물흐름 구배 또는 시공오차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정,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주 출입구 인근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음.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주 출입구 인근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공급안내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시공사가 안내하는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공개공지, 공용공간, 주차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층 호실은 경관 조명 및 각종 사인물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성능위주설계대상물로서 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등 설치위치는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건물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명칭은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이며,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725번지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02. 21 시행)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건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공급안내문, 공급단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공급안내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공급안내문 등 인쇄물, 건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건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사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준하여 설치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디지털도어락,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건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제품이 설치됨.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설계관련 유의사항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환산법: 호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호별면적(m²)/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이 경우 면적 계산상 소수점 정산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시 면적의 오차 발생으로 일부 호수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의 변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외부 주동 색채 계획은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계획된 내용으로, 차후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추가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1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내 각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 1층 오피스텔 주출입구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 호실의 세대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은 호실 내 신발장, 침실내부벽체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건축허가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동측 도로변에 계획된 통합 차량 출입구의 진출입 차량에 따라 인근 주동의 호실에는 차량 소음, 매연, 눈부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급배기용)과 제연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은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103동 지하 1층, 지하 3층 및 104동 12층 각 EPS/TPS실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호실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아파트 주차장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단기로 통제하고, 각 동별,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지하 2~4층에서 오피스텔 동(104동) 계단실로 피난 가능한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시 개폐 가능한 도어가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출입이 불가하나 비상시에 출입이 가능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공급안내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정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조정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외벽 디자인(요철계획, 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호실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오피스텔 침실1 내에 배연창이 설치되며, 화재시 감지기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는 개폐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형태, 재질, 크기는 본 공사시 결정됩니다. 제품에 따라 창틀에서 내부로 장치가 돌출되거나 연결철물 등으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와 간섭될 수 있으며, 창호 종류, 형태, 크기, 설치 위치, 개폐방식, 프레임/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인허가 협의 및 관계 법규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창호의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람에,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시설물(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휀룸, 소화전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호실 내 실외기실 및 공용부 E/V와 인접한 호실의 경우 실외기 및 엘리베이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 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층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호실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옥외계단 포함), 패턴, 마감재, 사인물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화재예방, 보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거 성능위주설계대상물로서 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관 진입장 계획 위치는 소방차에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위치로 계획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의견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창호의 크기, 형태-등이 달리 시공되며 추가 부착물(표식 등)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단위 호실 내 창호 및 유리 사양은 건축물의 용도(오피스텔)에 맞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며,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급배기시설, DA(환기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과 인접한 호실은 냄새, 소음, 분진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호실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변 도로, 주변 건물과 인접한 저층 실의 경우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 오피스텔동 2층은 필로티가 설치되었으므로, 필로티 상부 실은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호실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 밀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지하 1층 통행로 유효높이는 2.7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차량 및 트럭 등 일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단지 내 지상 비상소방차로를 이용해야 함.
- 전기차 충전시설 비주거(지하1층 1대), 주거(지하4층 5대), 자전거 보관소(지상 1층)는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 시공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외층의 기준이 상이함.
- 단지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등, 지상2층 데크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차량진입불가)
- 단지 출입구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없음.
-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VII- 0.243g 임.
- 공개공지 및 외부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실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식재계획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개공지 및 전면도로와 인접한 실은 소음, 분진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본 분양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람.
- 본 건물의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호실은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복도 및 계단실 일부에 호실 공급용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배수맨홀등의 위치 및 배수구조물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설계변경 포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허가도면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하여 시공됨.
- 천연자재(대리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싱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타입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타입 내 설치되는 약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호실별 내부 단차 부위 및 단차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호실별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등은 호실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오피스텔 각 호실 내에 배연창 및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연창 및 소방관 진입창 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오피스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타입의 창호 프레임 및 유리 사양, 사이즈 등은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호실 내 설치되는 타일은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음.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저층부 석재마감 타입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현관문 및 타입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호실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현관바닥, 욕실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천연 대리석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호실 내부 설치되는 불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 (워크인 타입 등)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급안내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같은 타입일지라도 타입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호실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호실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함.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음.(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인근 비상벨시스템에 테그하는 방식임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는 분양가미포함이며 입주시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오피스텔 난방은 각 호실별 설치되는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으로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난방요금이 부과되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본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위호실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호실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환기설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됨.
- 침실이 인접한 호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물 외벽면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공급안내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환기설비인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 (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오피스텔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덕트 및 자동식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쿡탑설치 벽면에 설치되어 상부장 깊이가 줄어들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관리단의 구성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오피스텔 시설물로서 상가 입점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 및 발코니/실외기실에는 난방배관이 설치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조대리석 및 석재 / 타일 자재의 경우 제조과정에 따라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 사항이 아님.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 (세대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104-0003400호	일금 일백팔십일억칠천사백팔십칠만원정 (₩ 18,174,8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 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1.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5.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5.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점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5.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5.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품 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여 납부한 입주금
 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1.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점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1.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1.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VI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단위:원,VAT포함)	비고
건축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 2,390,995,200)	
전기	(주)동도이앤씨	(₩ 579,556,900)	
소방/통신	서한건설탄트(주)	(₩ 711,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은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본 공급계약의 공급금액을 수납 및 집행업무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담당할 뿐 자금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사업주체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업관계자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대구칠성피에프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37 (반포동 하이브 타워)	110111-7682176
시공사	(주)호반건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204711-0007384
분양대행사	(주)유티파트너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131111-0297737
감리사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6층(문정동, 문정테라타워)	110111-1820441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hobansummit-cs.co.kr>

■ 분양안내 : 1522-4994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
-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 분양홈페이지 : <http://hobansummit-cs.co.kr>
- 분양문의 : 1522-4994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
- ※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